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60호 2022. 1. 6.(목)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19호 사천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----- 1
- 사천시 공고 제20호 사천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----- 2
- 사천시 공고 제21호 사천시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공표 ----- 4

## 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 3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 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사천시 공고 제19호

##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및 「사천시 주민투표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,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1월 6일

사 천 시 장

(단위 : 명)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			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	비 고
합 계	내국인	외국인		
93,130	93,040	90	10,348	청구권자 총수의 1/9 이상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사천시 공고 제20호

##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사천시장 및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1월 6일

사 천 시 장

### ▣ 시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(15/100)	읍·면·동별 최소서명인 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
계	93,117			
사 천 읍	14,828	13,968	932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5개 읍·면·동 이상에서 읍·면·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정 동 면	10,874		932	
사 남 면	11,594		932	
용 현 면	6,211		932	
축 동 면	1,484		223	
곤 양 면	3,138		471	
곤 명 면	2,634		396	
서 포 면	3,278		492	
동 서 동	5,719		858	
선 구 동	4,417		663	
동 서 금 동	5,408		812	
별 용 동	13,156		932	
향 촌 동	5,883		883	
남 양 동	4,493	674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## ▣ 시의회 의원

(단위 : 명)

자치단체별	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(20/100)	읍·면·동별 최소서명인 수	주민투표 청구요건
시·군	선거구	읍·면·동				
계			93,117			
사천시	가선거구	계	43,507	8,702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2개 읍·면 이상에서 읍· 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		사 천 읍	14,828		436	
		정 동 면	10,874		436	
		사 남 면	11,594		436	
		용 현 면	6,211		436	
	나선거구	계	10,534	2,107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2개 면 이상에서 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을 받아야 함
		축 동 면	1,484		106	
		곤 양 면	3,138		106	
		곤 명 면	2,634		106	
		서 포 면	3,278		106	
	다선거구	계	14,629	2,926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을 받아야 함
		동 서 동	5,719		147	
		선 구 동	4,417		147	
		남 양 동	4,493		147	
	라선거구	계	24,447	4,890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을 받아야 함
		동서금동	5,408		245	
		벌 용 동	13,156		245	
		향 촌 동	5,883		245	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사천시 공고 제21호

##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

(2022. 1. 12일까지 적용)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「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(2022. 1. 13일부터 적용)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 및 「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1월 6일

사 천 시 장

(단위 : 명)

조례 제정·개폐 청구권자 총수			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	요 건	비 고
합 계	내국인	외국인			
93,117	93,040	77	1,863	청구권자(19세 이상) 총수의 1/50 이상	2022. 1. 12. 까지
94,122	94,045	77	1,345	청구권자(18세 이상) 총수의 1/70 이상	2022. 1. 13. 부터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사천시 공고 제3호

「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1월 6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(안 제24조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 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도시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3211,  
FAX : 831- 6033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
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760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, 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”를 “수수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 
광고물

별표 6 제2호나목의 과태료란 중 “11일째부터”를 “31일째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수수료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제1항에</u>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4조(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③ ----- <u>제1항에도</u> ----- ----- <u>수수료</u>----- ----- 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</u></p>